

1. 운송약관

2. 운송약관의 신·구대비표(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[<개정 2021. 8. 27.>](#)

1. 사업의 종류

2.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
3. 화물의 인도·인수·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

4.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

5.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

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16조의2 삭제 [<2004. 4. 21.>](#)

제17조(분쟁조정의 신청)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3. 3. 23.>](#)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17조의2 삭제 [<2007. 2. 1.>](#)

제17조의3 삭제 [<2007. 2. 1.>](#)

제17조의4 삭제 [<2007. 2. 1.>](#)

제18조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·운전경력 등의 요건)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(이하 "화물자동차 운전자"라 한다)의 연령·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<개정 2015. 5. 26.>](#)

1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

2. 20세 이상일 것

3.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. 다만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18조의2(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)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(이하 "운전적성정밀검사"라 한다)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. [<개정 2013. 7. 11., 2018. 12. 31.>](#)

1. 삭제 [<2018. 12. 31.>](#)

2. 삭제 [<2018. 12. 31.>](#)

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,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,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<개정 2011. 12. 31., 2013. 7. 11., 2017. 1. 6., 2018. 12. 31.>](#)

1. 신규검사: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(이하 "화물운송 종사자격증"이라 한다)을 취득하려는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
가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 실시일

나.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(이하 "교통안전체험교육"이라 한다) 시작일

2. 자격유지검사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